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중앙소방학교 신입교육과정 생활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생활평가(가·감점) 기준을 신입교육과정 교육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,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가. 신입교육과정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신입소방공무원과정을 신입교육과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(제명)
- 나.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, 훈련교수, 교육운영교수,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(안 제3·17·20·22·23·24조 등)
- 다.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:30에서 22: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(안 25조)
- 라. 생활평가 기준을 신입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(안 34조, 별표 11·12)